

전북지역 성인남성의 성매매에 대한 의식 및 실태

이윤애(전북발전연구원 연구원)

I. 들어가며

성매매피해여성의 보호와 성매매 알선업자 및 구매자 처벌을 골자로 한 성매매방지법이 23일로 시행 2주년을 맞았다. 2004년 9월23일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 이후 공공연하게 성매매알선이 이루어졌던 집창촌이 급격하게 축소되었고, 피해여성들에 대한 지원이 체계화되었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성매매가 범죄행위라는 사회적 인식과 함께 성매매문제를 인권문제로 접근하려는 사회적 관심이 확산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여성가족부의 자료에 의하면 그동안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탈성매매여성에 대한 자활지원정책이 성매매여성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있으며,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입소자 3,507명 중 432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503명이 취업 또는 진학하였으며, 20명이 창업하여 탈성매매 이후 자활이 성공적이라고 하였다. 또한 공공연한 성매매 알선현장인 성매매 업소 집결지는 법 시행 이후 업소 수는 34.6%, 종사자는 52%가 감소되었으며, 성매매 집결지 자활지원사업에 참여한 여성 957명 중 50.6%인 484명이 탈 업소가 이루어졌고, 성매매로 다시 돌아간 여성은 전체의 8.9%인 43명에 그치는 등의 성과를 보였다고 발표하였다(2006, 여성가족부).

하지만 사회 일각에서는 구매자까지 처벌하는 성매매방지법에 강하게 반발하기도 하고, 법이 오히려 음성적인 성매매와 해외 원정 성매매를 조장하는 등의 부작용을 내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집결지에 대한 단속으로 고전적인 의미의 성매매는 축소되었지만 음성적이고 새로운 모습의 성매매로 대체되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안마시술소, 스포츠마사지, 대딸방 등의 음란업소에서는 유사 성행위뿐만 아니라 성매매까지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고, 인터넷도 성매매창구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즉 성매매방지법으로 성매매 총수는 줄어들지 않고 성매매의 형태만 변했다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제기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는 것은 아직도 성매매에 대한 일반인들의 의식변화가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과연 우리 국민들의 성매매에 대한 의식이나 행위에 있어 어떠한 변화가 있었고, 특히 그 과정에서

성매매방지법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성인남성들의 이해정도는 어느 수준이며, 성매매방지를 위한 정책집행 과정에서 어떤 홍보수단이 가장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성매매의식 및 행위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고, 변화과정에서 의미있게 작용한 점은 무엇인지 검토하는 것은 중요하다.

본 발표자료는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일반 성인남성들의 성매매관련 의식 및 행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조사·분석한 결과로서, 2005년 9월 성매매방지법 시행 1주기 즈음에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성인남성 502명을 대상으로 설문지 및 면접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II. 성인남성의 성매매의식 및 실태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먼저 본 연구의 성인남성에 대한 자료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응답자의 연령별 분포는 20대 110명(22.2%), 30대 153명(30.6%), 40대 153명 (30.6%), 50대 84명(16.6%)로서 30대와 40대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교육수준은 대졸이 210명(42.1%)으로 가장 많았고, 고졸이하가 147명(29.5%), 대졸이상 253명(50.7%)의 분포를 보였다.

종교형태는 개신교 79명(15.7%), 가톨릭교 103명(20.5%), 불교 47명(9.4%), 원불교 10명(2.0%)의 분포를 보였으며, 종교가 없는 사람이 248명(49.4%)로 나타났다.

혼인상태는 기혼 329명(66.1%)으로 가장 많았고, 미혼 142명(28.5%)의 분포를 보였으며, 별거 8명(1.6%), 이혼 12명(2.4%), 사별 7명(1.4%)으로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 5.4%의 분포를 보였다.

또한 응답자의 직업과 경제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응답자의 직업별 분포는 사무직/기술직이 132명(26.6%)으로 가장 많고, 판매/서비스직 108명(21.8%), 기능직/생산직 69명(13.9%)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월평균 소득은 100만원 미만 11명(2.2%), 100만원~200만원 133명(26.6%)이었고, 200만원~300만원이 193명(38.6%)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300만원~400만원 96명(19.2%), 400만원 이상이 13.4%이

었다.

<표 1>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명, %)

변 수	구 분	빈 도	비 율
연 령	20 대	111	22.2
	30 대	153	30.6
	40 대	153	30.6
	50 대	84	16.6
합 계		501	100.0
학 력	중졸이하	17	3.4
	고 졸	130	26.1
	전문대졸	96	19.2
	대 졸	210	42.1
	대학원 이상	43	8.6
	기 타	3	0.6
합 계		499	100.0
종 교	종교 없다	248	49.4
	기독교	79	15.7
	가톨릭교	103	20.5
	불 교	47	9.4
	원불교	10	2.0
	기 타	15	3.0
합 계		502	100.0
혼인상태	기 혼	329	66.1
	별 거	8	1.6
	이 혼	12	2.4
	사 별	7	1.4
	미 혼	142	28.5
합 계		498	100.0

<표 2> 응답자의 경제적 특성

(단위 : 명, %)

변 수	구 분	빈 도	비 율
직 업	기능직/생산직	69	13.9
	판매/서비스직	108	21.8
	자영업	37	7.5
	사무직/기술직	132	26.6
	경영/관리/행정관리직	46	9.3
	전문직/자유직	60	12.1
	기 타(학생, 군인 등)	44	8.9
합 계		496	100.0
월평균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11	2.2
	100만원 ~ 200만원 미만	133	26.6
	200만원 ~ 300만원 미만	193	38.6
	300만원 ~ 400만원 미만	96	19.2
	400만원 ~ 500만원 미만	36	7.2
	500만원 이상	31	6.2
합 계		500	100.0

2. 성매매예방을 위한 교육이나 홍보활동에 대한 경험

성인남성의 경우 성매매예방이나 성매매성매매에 따른 피해 및 부작용에 대한 교육을 받았을 경우 상대적으로 성매매 행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성매매예방에 관련된 정보수집의 통로로 교육이나 강연, 언론홍보 등에 대한 경험을 분석하였다.

<표 3>에 의하면 성매매예방에 관련된 강의를 수강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분석한 결과 경험이 없는 응답자가 87.5%,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12.5%로 나타났으며, 성매매예방 관련 강연회 등에도 10.6%만이 참석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 사회에 성매매예방 관련 교육이나 강연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성매매예방을 홍보하기 위한 언론매체를 접촉한 경험여부에 대한 응답에서 45.0%는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고, 성매매예방 관련 홍보책자 등을 구독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30.3%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성매매예방 관련 정보는 주로 언론매체를 통해 얻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강의를 수강하거나 강연회에 참석, 관련자료들을 구독하는 등의 적극적인 정보수집은 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3> 성매매 예방교육 경험

(단위 : 명, %)

내용	경험여부	경험이 있다		경험이 없다		합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성매매예방관련 강의수강		63	12.5	439	87.5	502	100.0
성매매예방관련 강연참석		53	10.6	449	89.4	502	100.0
성매매예방관련 언론매체접촉		226	45.0	276	55.0	502	100.0
성매매예방관련 홍보책자 등 자료구독		152	30.3	350	69.7	502	100.0

<표 4> 성매매예방 홍보활동 경험

(단위 : 명, %)

내용	경험여부	경험이 있다		경험이 없다		합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여성단체의 거리홍보		85	16.9	417	83.1	502	100.0
여성단체 발간 홍보책자 읽기		62	12.4	440	87.6	502	100.0
정부의 언론홍보 활동		178	35.5	324	64.5	502	100.0
정부 발간 홍보책자 읽기		56	11.2	446	88.8	502	100.0
경찰의 단속활동 직접 목격		118	23.5	384	76.5	502	100.0
언론의 성매매방지법 위반자 구속뉴스 시청		306	61.0	196	39.0	502	100.0

성매매방지법 시행을 전후하여 정부 및 여성단체, 관련기관의 성매매예방 및 홍보활동에 대한 성인남성들의 경험을 분석하였다. <표 4>에 의하면 성매매예방 홍보활동에 대한 남성들의 경험은 성매매방지법 위반자 구속에 대한 언론의 보도내용을 시청한 것을 제외하면 다른 활동에 대한 경험은 비교

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매방지법 위반자에 대한 구속 뉴스를 시청한 사람은 61.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정부의 언론홍보활동을 경험한 사람은 35.5%, 경찰의 단속활동을 직접 목격한 경우는 23.5%이고, 여성단체의 거리홍보 16.9%, 여성단체 및 정부에서 발간하는 홍보책자를 읽어본 경험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에서 여성단체와 정부의 성매매예방활동이나 단속활동에 대한 평가를 보면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주로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부의 성매매예방 및 단속활동이 일시적으로 추진되다가 중단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43.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별다른 느낌이 없거나(16.7%), 잘못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5.5%로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65.4%였다. 반면 성매매예방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19.7%, 성매매단속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14.9%로서 성매매예방 및 단속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는 34.6%로 낮게 나타났다.

<표 5> 성매매예방을 위한 홍보 및 단속활동에 대한 평가

(단위 : 명, %)

내 용	구 분	빈 도	비 율
잘못하고 있다		24	5.5
별 다른 느낌이 없음		73	16.7
단속이 일시적으로 진행되다 중단될 것이라고 생각		188	43.2
성매매예방에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판단		86	19.7
성매매단속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판단		65	14.9
합 계		436	100.0

3. 성매매 유인환경에 노출정도

성매매방지법 시행이후 성매매집결지 단속이 강화되면서 공개적인 성매매가 점차 어렵게 되자 은밀하고 사적인 거래에 의해 성매매가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는 성인에 국한되지 않고 청소년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확산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인터넷이 성매매를 유인하거나 혹은 중개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성인남성의 경우 인터넷을 통한 여성노출장면 및 동영상 보거나 포르노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혹은 성매매관련 채팅경험에 대해 분석하였다. <표 6>에 의하면 인터넷을 통해 성매매 채팅경험이 있는 성인 남성은 많지 않았으나, 여성노출 동영상을 보거나 포르노 사이트에 접속한 경험이 있는 남성들은 과반수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매채팅을 경험한 남성은 20.4%인 반면 경험이 없는 남성은 79.6%를 차지하였다. 여성노출 동영상을 보았던 경험이 있는 남성은 62.6%로 높게 나타났으며, 포르노 사이트에 접속한 경험이 있는 남성도 51.5%로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대다수의 성인 남성들의 인터넷 활용은 생활의 일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러한 일상생활에서 성매매 유인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어 유인환경을 차단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처활동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표 6> 인터넷매체를 통한 성매매환경 노출경험

(단위 : 명, %)

구분 내용	전혀 없다		거의 없다		약간 있다		많은 편이다		합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여성노출 동영상보기	50	10.0	137	27.4	202	40.4	111	22.2	500	100.0
포르노사이트 접속	74	14.8	168	33.7	190	38.1	67	13.4	499	100.0
성매매 채팅	184	36.9	213	42.7	81	16.2	21	4.2	499	100.0

<표 7> 성인남성의 성매매환경 노출경험

(단위 : 명, %)

구분 내용	전혀 없다		거의 없다		약간 있다		많은 편이다		합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위성방송을 통한 여성노출장면 시청	41	8.2	128	25.6	253	50.6	78	15.6	500	100.0
성매매 홍보전단	45	9.0	169	33.9	218	43.7	67	13.4	499	100.0
동료 및 친구의 성매매경험담 듣기	59	11.8	114	22.8	210	42.1	116	23.2	499	100.0
동료 및 친구와 성매매 관련 답소	86	17.3	121	24.3	200	40.2	90	18.1	497	100.0

또한 인터넷뿐만 아니라 성매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매체로서 위성방송이나 성매매 홍보전단, 동료 및 친구의 성매매 경험담을 듣거나 성매매 관련 대화를 하는 등의 다른 형태의 성매매유인환경 노출 정도도 높게 나타났다. <표 7>에 의하면 위성방송을 통해 여성노출장면을 시청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66.2%로 가장 많았고, 동료 및 친구의 성매매 경험담을 들어본 경우 65.3%, 동료 및 친구와 성매매관련 대화를 해 본 경험이 있는 경우 58.3%, 성매매 홍보전단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경우 57.1%를 차지하였다. 위의 결과는 성인남성들의 경우 대부분 일상생활에서 성매매환경에 노출된 경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성매매 유인환경이 우리사회에 광범위하게 산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 성매매유인환경의 차단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4.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인식

정부는 성매매방지법 시행과 더불어 각종 언론매체 및 홍보전단을 통해 방지법의 내용에 대해 대국민 홍보에 주력하였으며, 여성단체 또한 각종 행사와 캠페인을 통해 성매매방지법이 조기에 정착되고 우리사회의 성매매근절을 위해 노력하였다. 정부와 여성단체의 성매매방지법 조기정착을 위한 노력의 결과 본 조사연구에서도 성매매방지법의 시행과 성매매방지를 위한 특별단속을 잘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에 의하면 성매매방지법의 시행을 알고 있는 응답자는 65.5%로 높게 나타났으며, 성매매방지를 위한 특별단속에 대해서도 60.1%가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성매매방지법이나 특별단속에 대해 많은 성인 남성들이 알고 있었다.

<표 8> 성인남성의 성매매방지법 및 특별단속 이해정도

(단위 : 명, %)

내용	구성		잘 알고 있다		알고 있다		그저 그렇다		잘 모른다		합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성매매방지법 인식	91	18.1	238	47.4	133	26.5	40	8.0	502	100.0		
성매매방지 특별단속	100	20.0	201	40.1	121	24.2	79	15.8	501	100.0		

또한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지지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도 응답자들의 과반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에 의하면 성매매방지법에 적극 찬성하는 경우가 16.1%, 찬성하는 경우 38.8%로서 응답자의 54.9%가 성매매방지법을 찬성하였다. 반면 성매매방지법을 반대한 경우 16.3%, 적극 반대하는 경우 3.6%로서 성매매방지법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은 19.9%로 낮게 나타났다.

<표 9> 성인남성의 성매매방지법 지지여부

(단위 : 명, %)

성매매방지법 지지정도	빈 도	비 율
적극 찬성한다	80	16.1
찬성한다	193	38.8
잘 모르겠다	126	25.3
반대한다	81	16.3
적극 반대한다	18	3.6
합 계	498	100.0

성매매방지법의 정책방향이 어느 정도 적절하고 성매매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와 성매매 업자에 대한 처벌강화 내용이 어느 정도 적절한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표 10>에 의하면 성매매방지를 위한 정책방향이 적절하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36.9%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하는 응답자(21.1%)보다는 높게 나타났으나, 42.0%는 그저 그렇다고 평가를 유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매매방지법이 성매매여성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보호하는 조치는 적절하다고 평가하는 응답자는 57.9%로 높게 나타났으며, 성매매 알선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킨 정책이 적절했다고 평가한 경우는 73.4%로서 응답자의 대부분이 성매매업주의 처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성매매방지법의 시행목적은 일차적으로 성매매의 근절 및 예방에 있으며, 기존의 성문화를 변화시켜 건전한 가족중심 문화가 활성화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있다. <표 11>에 의하면 성매매방지법의 추진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보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높게 나타났다. 성매매방지법이 성매매를 축소시키거나 근절시킬 것이라고 추진효과를 기대하는 응답자는 14.0%

인 반면 추진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하는 응답자는 53.6%로서 과반수 이상이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의 성매매방지정책의 효과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는 24.8%인 반면 부정적인 평가는 36.2%였고, 가족문화가 활성화 될 것이라는 평가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는 28.0%, 부정적인 평가는 33.5%를 나타냈다. 이처럼 성매매방지법이 성매매근절 및 축소에 효과적이고, 건전한 성문화 형성에 기여할 것이라는 성매매방지법의 효과성에 대해 성인 남성들은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성매매방지법 주요내용에 대한 평가

(단위 : 명, %)

구분 방지법주요내용	정말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합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정책방향의 적절성	27	5.4	158	31.5	211	42.0	82	16.3	24	4.8	502	100.0
성매매여성에 대한 보호조치 도입의 적절성	75	15.0	215	42.9	138	27.5	66	13.2	7	1.4	501	100.0
성매매관련 업자에 대한 처벌강화의 적절성	148	29.5	220	43.9	98	19.6	30	6.0	5	1.0	501	100.0

<표 11> 성인남성의 성매매방지법 효과성에 대한 평가

(단위 : 명, %)

평가 정책의 효과성	정말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합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방지법 추진효과가 클 것이다	5	1.0	65	13.0	162	32.4	234	46.8	34	6.8	500	100.0
정부의 성매매방지정책은 효과적이다	24	4.8	100	20.0	196	39.1	122	24.4	59	11.8	501	100.0
가족문화가 활성화 될 것이다	28	5.6	112	22.4	193	38.5	126	25.1	42	8.4	501	100.0

<표 12> 성매매방지법의 부정적 효과와 근절대책에 대한 평가

(단위 : 명, %)

평가	정말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합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방지법 시행에 따른 성매매여성의 생계문제	58	11.6	238	47.5	140	27.9	55	11.0	10	2.0	501	100.0
처벌의 강화에도 성매매근절은 불가하다	88	17.6	219	43.7	104	20.8	78	15.6	12	2.4	501	100.0
성매매축소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 단속 필요	139	37.8	199	39.8	116	23.2	36	7.2	10	2.0	500	100.0
성매매축소를 위한 처벌강화 필요	127	25.3	191	38.1	120	24.0	47	9.4	16	3.2	501	100.0

성매매방지법의 부정적인 효과와 근절대책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자의 동의 정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에 의하면 성매매방지법 시행을 위한 정부의 준비부족으로 성매매여성이 생계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보는 응답자는 59.1%로 높게 나타났으며, 성매매 관련자의 처벌강화에도 불구하고 성매매가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응답자는 61.3%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성매매방지법의 부정적인 효과에 동의하면서도 성매매축소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 단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77.6%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성매매축소를 위해서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자 또한 63.4%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성인 남성들은 정부의 성매매방지법 추진효과에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성매매근절을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더욱 강력한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해야한다고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 성매매방지법 시행을 전후한 성매매 의식변화

성매매방지법 시행을 전후하여 성인 남성의 성매매의식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성매매의식에 대해서는 성구매의 정당성에 의식, 여성의 성구매 가능성에 대한 의식, 업무성 성구매에 대한 의식, 성구매 접근용이성에 대한 의식, 성매매여성의 자발성에 대한 의식을 살펴보았다.

먼저 성인남성들은 성구매의 정당성에 대해 방지법 시행을 전후하여 변화가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성구매의 정당성에 동의하는 경우 방지법 시행 이전에는 35.8%에서 시행이후에는 31.4%로 감소하였고,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18.3%에서 23.0%로 증가하였다. 이는 성매매방지법 시행을 전후하여 성인남성들의 성구매 정당성에 대한 의식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13> 성매매방지법 시행전후의 성구매정당성에 대한 의식

(단위 : 명, %)

시기구분 정당성에 대한 의식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전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그렇지 않다	90	18.3	113	23.0
그저 그렇다	226	45.9	224	45.6
그렇다	176	35.8	154	31.4
합계	492	100.0	491	100.0

<표 14>에서는 성매매방지법 시행을 전후하여 여성의 성구매 가능성에 대한 의식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여성의 성구매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를 보인 응답자는 방지법 시행 이전에는 48.7%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으며, 시행 이후 45.8%로 약간의 감소를 보였고, 허용하지 못하는 응답자는 19.5%에서 21.0%로 근소한 증가를 보였다. 여성도 남성과 같이 성구매를 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 여성들의 성구매에 대해 허용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5>에서는 업무성에 의한 성구매에 대한 의식을 살펴보았는데,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전에는 55.2%가 동의하였으나 시행이후에는 52.0%로 근소하게 감소를 보였다. 업무성에 의한 성구매에 동의하지 않는 응답자는 방지법 시행이전에는 25.4%에서 시행이후 29.6%로 증가하였다. 업무성에 의한 성구매에 대한 의식은 성매매방지법 시행이후 긍정적인 변화를 보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표 14> 성매매방지법 시행전후의 여성의 성구매가능성에 대한 의식

(단위 : 명, %)

시기구분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전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빈 도	비 율	빈 도	비 율
여성의 성구매 허용				
그렇지 않다	97	19.5	104	21.0
그저 그렇다	158	31.8	165	33.3
그렇다	242	48.7	227	45.8
합 계	497	100.0	496	100.0

<표 15> 성매매방지법 시행전후의 남성의 업무성 성구매에 대한 의식

(단위 : 명, %)

시기구분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전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빈 도	비 율	빈 도	비 율
업무성 성구매				
그렇지 않다	125	25.4	145	29.6
그저 그렇다	96	19.5	90	18.4
그렇다	272	55.2	255	52.0
합 계	493	100.0	490	100.0

<표 16>에서는 성구매의 접근용이성에 대한 의식이 성매매방지법 시행을 전후하여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성구매하기가 어렵다고 응답한 경우 방지법 시행이전에는 20.9%에서 시행이후 24.6%로 약간 증가하였고, 성구매하기가 어렵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는 시행이전에는 44.5%에서 시행이후 37.9%로 감소하였다. 성매매방지법 시행을 전후하여 응답자들은 성구매의 접근용이성이 낮아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7>에서는 성매매여성의 성매매 자발성에 대한 의식변화를 살펴보았다. 성매매방지법 시행을 전후하여 응답자들은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다고 보는 경우 시행이전에는 38.2%에서 시행이후 37.0%로 근소하게

감소하였으며, 자발적으로 성매매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경우 시행이전에는 16.7%에서 시행이후 19.8%로 3.1% 증가하였다. 이는 성매매방지법 시행으로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다고 보는 시각이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16> 성매매방지법 시행전후의 성구매 접근용이성에 대한 의식

(단위 : 명, %)

시기구분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전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성구매 접근용이성				
그렇지 않다	103	20.9	121	24.6
그저 그렇다	171	34.6	184	37.5
그렇다	220	44.5	186	37.9
합계	494	100.0	491	100.0

<표 17> 성매매방지법 시행전후의 성매매자발성에 대한 의식

(단위 : 명, %)

시기구분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전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여성의 성매매자발성				
그렇지 않다	83	16.7	98	19.8
그저 그렇다	224	45.1	214	43.2
그렇다	190	38.2	183	37.0
합계	497	100.0	496	100.0

<표 18>을 살펴보면 성매매방지법 시행으로 남성들의 성구매가 정당하다고 보는 시각에서 정당하지 않다고 보는 시각으로 28.6%의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는데, 13.7%는 정당하다고 보는 시각으로 변화되기도 하였다. 여성들의 성구매가능성에 대해서도 남성들과 똑같이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으로 16.0%의 변화를 보였으며 11.1%는 긍정적으로 보기도 하였다. 업무성

성구매에 대해서도 16.0%가 부정적인 의식으로 변화되었으며, 성구매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는 응답률도 24.1%의 변화를 보였다. 또한 여성들이 성매매를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식으로 15.2%의 변화를 보였다. 이러한 의식의 변화는 성매매방지법의 긍정적인 효과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표 18> 성매매방지법 시행을 전후한 의식변화 분석

(단위 : 명, %)

구분	성구매 정당성		여성의 성구매가능성		업무성 성구매		성구매 접근용이성		여성의 성매매자발성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성매매정당성에 대한 의식변화										
긍정적 의식에서 부정적 의식으로 변화	140	28.6	79	16.0	78	16.0	118	24.1	75	15.2
변화없음	283	57.7	361	72.9	353	72.5	322	65.7	317	64.0
부정적 의식에서 긍정적 의식으로 변화	67	13.7	55	11.1	56	11.5	50	10.2	103	20.8
합 계	490	100.0	495	100.0	487	100.0	490	100.0	490	100.0

6. 성매매방지법 시행전후의 성인남성의 행위변화

본 연구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성매매방지법 시행이후 우리사회의 성매매현상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표 19>에 의하면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전에 성구매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45.4%, 경험이 없는 응답자는 54.6%를 차지하고 있다. 방지법 시행이후에는 성구매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21.3%로 감소하였고, 경험이 없는 응답자는 78.7%였다. 성매매방지법 시행이후 성의식의 변화와 정부의 단속으로 성구매행위가 큰 폭으로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20>에서 성구매빈도에 있어서도 1~2회 정도는 18.1%에서 11.8%로, 3~4회 14.3%에서 5.0%로 크게 감소되는 등 전반적으로 성매매방지법 시행이후 성구매빈도가 감소되었다.

성매매방지법 시행으로 성구매자 비율이 큰 폭으로 감소되었으며, 성구매

빈도 또한 감소된 것을 알 수 있다.

<표 19> 성매매방지법 시행전후의 성구매경험 분석

(단위 : 명, %)

시기구분 \ 성구매경험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전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성구매경험이 없다	274	54.6	395	78.7
성구매경험이 있다	228	45.4	107	21.3
합계	502	100.0	502	100.0

<표 20> 성매매방지법 시행전후의 성구매 빈도 분석

(단위 : 명, %)

시기구분 \ 성구매빈도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전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1 ~ 2회 정도	91	18.1	59	11.8
3 ~ 4회 정도	72	14.3	25	5.0
5 ~ 6회 정도	24	4.8	12	2.4
7 ~ 9회 정도	10	2.0	1	0.2
10회 이상	31	6.2	10	2.0
없다	274	54.6	395	78.7
합계	502	100.0	502	100.0

<표 21>에서 살펴보면 성매매방지법 시행이전에는 성구매 장소로서 성매매집결지 60.5%로서 주로 집창촌에서 이루어졌고, 단라주점 30.7%, 룸살롱 25.0% 순이었으나, 방지법 시행이후 집결지에서의 성구매는 48.6%로 감소되고, 노래방 23.4%, 유흥주점 22.4%, 안마시술소 29.0%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전화방, 보도방, 숙박시설 등에서 구매하는 경우도 있었다.

<표 22>에서 살펴보면 성매매방지법 시행을 전후하여 성인남성들의 성구매 행위의 변화를 살펴보면 방지법 시행으로 성구매행위를 중단한 사람은 25.3%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구매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도 20.1%에 달했고, 새롭게 시작한 사람도 6명(1.2%)이 있었다.

<표 21> 성매매방지법 시행전후의 성구매장소 분석

(단위 : 명, %)

시기구분 성구매장소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전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노래방	53	23.2	25	23.4
티켓다방	25	11.0	9	8.4
성매매집결지	138	60.5	52	48.6
룸살롱	57	25.0	22	20.6
유흥주점	44	19.3	24	22.4
단란주점	70	30.7	18	16.8
안마시술소	52	22.8	31	29.0
기 타	87	38.1	50	46.7

<표 22> 성매매방지법 시행전후의 성인남성의 성구매 행위변화

(단위 : 명, %)

성구매 행위변화	빈도	비율
성구매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	268	53.4
성구매를 중단한 사람	127	25.3
새롭게 성구매를 경험한 사람	6	1.2
성구매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	101	20.1
합계	502	100.0

<표 23> 성매매방지법 시행전후의 성구매 동기분석

(단위 : 명, %)

시기구분 성구매동기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전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술자리에서 어울리다보니	129	56.6	51	47.7
성적욕구의 해소를 위해	39	17.1	26	24.3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10	4.4	7	6.5
호기심	18	7.9	4	3.7
동료(친구)들과 어울리다보니	23	10.1	14	13.1
접대관행상	8	3.5	5	4.7
기 타	1	0.4	-	-
합 계	228	100.0	107	100.0

<표 24> 성구매 이후의 느낌

(단위 : 명, %)

성구매 이후의 느낌	빈도	비율
죄책감	26	11.5
성병에 대한 두려움	39	17.2
만족스러운 느낌	30	13.2
기대와 달라서 실망감	26	11.5
별 느낌이 없었음	101	44.5
기 타	5	2.2
합 계	227	100.0

<표 23>에서 살펴본 성구매 동기를 보면 술자리에서 어울리다보니 성구매 행위를 한 응답자가 56.6%로 가장 많았고, 친구나 동료들과 어울리다 성구매를 하는 경우도 10.1%를 차지하였고, 접대관행상 성구매가 이루어지는 경

우도 3.5%로 나타났다. 이는 음주 및 동료, 친구들과의 어울리는 과정에서 분위기에 이끌려 성구매가 허용되는 문화, 접대문화의 폐단으로 성구매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성적욕구해소를 위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성구매를 하거나, 성적 호기심에서 성구매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성매매방지법 시행이후에도 성구매 동기에 있어서 큰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표 24>에서 살펴본 성구매 이후의 느낌은 별 느낌이 없는 경우가 44.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성병에 대한 두려움 17.2%, 죄책감과 실망감이 각각 11.5%를 보였으며, 만족스럽다고 응답한 경우도 13.2%를 보였다.

<표 25>에서는 개인의 인구학적 특성별로 성구매 행위변화를 분석하였다. 먼저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성매매방지법 시행이후 20대는 성구매를 중단한 비율보다 지속한 비율이 29.5%로 높게 나타났고, 30대 26.8%, 40대 28.1%로 중단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중단한 비율이 고졸이하에서 가장 낮고(23.5%), 대졸이상에서 지속하는 비율이 23.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종교의 유무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다. 종교가 있는 경우 성구매 경험이 없는 응답율은 60.2%를 보였으며 성구매를 지속하는 비율도 17.3%로서 없는 경우 25.4%보다 낮게 나타났다.

혼인상태에 따라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57.4%가 성구매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5.2%는 방지법 시행이후 중단했으며, 지속하는 비율도 17.3%로서 배우자가 없는 경우보다 낮게 나타났다.

<표 25> 남성의 개인적 특성과 성구매 행위변화 분석

(단위 : 명, %)

응답자 특성		남성의 성구매 변화						검증
		경험 없음		성구매 중단		성구매 지속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연령	20대	53	47.3	26	23.2	33	29.5	X ² =18.300 p<.01
	30대	77	50.3	41	26.8	35	22.9	
	40대	78	51.0	43	28.1	32	20.9	
	50대 이상	60	71.4	17	20.2	7	8.3	
합 계		268	53.4	127	25.3	107	21.3	
교육수준	고졸이하	89	58.2	36	23.5	28	18.3	X ² =2.682 p<.05
	전문대	52	54.2	25	26.0	19	19.8	
	대졸이상	127	50.2	66	26.1	60	23.7	
합 계		268	53.4	127	25.3	107	21.3	
종교유무	없음	115	46.4	70	28.2	63	25.4	X ² =10.022 p<.01
	있음	153	60.2	57	22.4	44	17.3	
합 계		268	53.4	127	25.3	107	21.3	
혼인상태	기 혼	189	57.4	83	25.2	57	17.3	X ² =12.565 p<.01
	이혼/사별	15	55.6	5	18.5	7	25.9	
	미 혼	61	43.0	38	26.8	43	30.3	
합 계		265	53.2	126	25.3	107	21.5	

<표 26>에서 살펴본 성매매예방관련 교육이나 홍보를 사전 경험했는지 여부에 따라 성구매 행위변화를 분석한 결과 성매매예방교육을 수강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성구매 경험이 없는 비율이 56.4%로 가장 높았으나, 성구매 중단행위나 지속여부에는 일관성을 보이지 못했다.

또한 성매매예방 홍보활동을 경험한 응답자들은 성구매 경험이 없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방지법 시행이후 중단하거나 지속시키는 비율에는 일

관성 있는 변화가 없었다.

성매매예방활동에 효과적이라고 평가하는 사람일수록 성구매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일수록 방지법 시행이후 중단하는 비율이 낮고, 지속시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성매매예방활동의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일 수록 성구매행위에 긍정적인 변화를 보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26> 남성의 성매매예방관련 사전경험과 성구매행위 변화 분석

(단위 : 명, %)

응답자 특성		남성의 성구매 변화						검증
		경험 없음		성구매 중단		성구매 지속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성매매방지 교육 수강경험	많 다	97	56.4	42	24.4	33	19.2	X ² =5.884 p<.05
	약 간	114	54.0	48	22.7	49	23.2	
	없 다	57	47.9	37	31.1	25	21.0	
합 계		268	53.4	127	25.3	107	21.3	
성매매예방 홍보활동 인지경험	많 다	46	64.8	12	16.9	13	18.3	X ² =16.478 p<.01
	약간 있다	105	57.7	38	20.9	39	21.4	
	거의 없다	65	46.8	37	26.6	37	26.6	
	전혀 없다	52	47.3	40	36.4	18	16.4	
합 계		268	53.4	127	25.3	107	21.3	
성매매예방 활동에 대한 평가	부정적	46	47.4	19	19.6	32	33.0	X ² =23.212 p<.001
	중립적	85	45.2	56	29.8	47	25.0	
	효과적	95	62.9	40	26.5	16	10.6	
합 계		226	51.8	115	26.4	95	21.8	

<표 27> 성매매방지법 인식에 따른 성구매 행위변화 분석

(단위 : 명, %)

응답자 특성		남성의 성구매 변화						검증
		경험 없음		성구매 중단		성구매 지속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성매매방지 법 인식	잘 알고 있다	167	50.8	92	28.0	70	21.3	X ² =8.300 p<.05
	그저 그렇다	78	58.6	27	20.3	28	21.1	
	잘 모른다	23	57.5	8	20.0	9	22.5	
합 계		268	53.4	127	25.3	107	21.3	
특별단속 인식	잘 알고 있다	154	51.2	85	28.2	62	20.6	X ² =5.682 p<.05
	그저 그렇다	67	55.4	25	20.7	29	24.0	
	잘 모른다	47	59.5	17	21.5	15	19.0	
합 계		268	53.4	127	25.3	107	21.3	
성매매방지 법 지지	지지한다	172	63.0	69	25.3	32	11.7	X ² =61.626 p<.001
	중립적이다	63	50.0	37	29.4	26	20.6	
	반대한다	32	32.3	19	19.2	48	48.5	
합 계		267	53.6	125	25.1	106	21.3	
성매매정책 에 대한 긍정적평가	그렇다	85	64.9	35	26.7	11	8.4	X ² =36.987 p<.001
	그저 그렇다	128	55.7	57	24.8	45	19.6	
	그렇지 않다	51	37.2	35	25.5	51	37.2	
합 계		264	53.0	127	25.5	107	21.3	
성매매환경 노출경험	전혀 없다	117	73.1	37	23.1	6	3.8	X ² =92.054 p<.001
	약간 있다	107	56.0	50	26.2	34	17.8	
	많다	41	28.7	37	25.9	65	45.5	
합 계		265	53.6	124	25.1	105	21.3	

<표 27>에서는 성매매방지법 인식에 따른 성구매행위 변화의 차이를 살펴 보았다. 먼저 성매매방지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응답자들과 그렇지 못한 응답자들 사이에서는 성구매 행위변화에 별다른 차이점이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방지법 시행이후 성구매를 중단한 경우는 방지법을 잘 알고 있는 그룹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별단속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그룹이 방지법 시행이후 성구매행위 중단을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가를 유보한 그룹이 가장 적은 비율로 중단하였다.

성매매방지법을 지지하는 그룹은 성구매 경험이 없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방지법을 반대하는 그룹이 방지법 시행이후에 까지도 성구매를 지속시키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성매매예방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그룹이 성구매경험이 없는 비율이 가장 높고, 중단시키는 비율도 가장 높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 그룹은 방지법 시행이후까지 지속시키는 비율이 가장 높다.

성매매환경에 노출된 경험이 없는 그룹은 성구매를 거의 하지 않고, 지속시키는 비율도 극히 낮다. 그러나 성매매환경에 노출된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성구매 경험이 없다는 응답률이 낮으며, 지속시키는 비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성매매방지법을 잘 알고 있거나 특별단속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성매매방지법을 지지하고, 성매매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성매매환경에 노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성구매를 한 경험이 낮고, 성구매 중단을 많이 하며, 지속시키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8>에서는 성매매방지법 시행이후 성구매의 어려움이나, 성구매의 두려움, 단속적발의 두려움 등 성구매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성구매의 어려움은 66.6%가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33.4%만이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해 성매매방지법 시행이후에도 성구매가 어렵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성구매의 두려움은 43.5%가 없다고 응답한 반면, 56.5%는 두려움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단속적발에 대한 두려움은 49.5%는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50.5%는 두려움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성매매방지법 시행이후 성구매의 어려움은 크게 있지 않으며, 단지 성구매의 두려움이나 단속적발의 두려움만 거의 절반 정도가 있다고 하고 있다.

<표 28> 성매매방지법 시행이후 성구매과정의 문제점 분석

(단위 : 명, %)

내 용 \ 구 분	전혀 없었다		거의 없었다		약간 있었다		아주 많았다		합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성구매의 어려움	32	27.4	46	39.2	36	30.8	3	2.6	117	100.0
성구매의 두려움	20	17.4	30	26.1	55	47.8	10	8.7	115	100.0
단속적발 두려움	15	13.8	39	35.7	49	45.0	6	5.5	109	100.0

Ⅲ. 결론 및 제언

이상과 같이 성매매방지법 시행이후 성인남성들의 성매매에 대한 의식 및 행위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았고, 변화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특히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성인남성들의 이해정도는 어느 수준이며, 이해수준을 향상시키는 교육 및 홍보수단은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며, 성매매의식 및 행위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고, 변화과정에서 의미 있게 작용한 점이 무엇인지를 검토하였다.

전북지역의 성인남성들은 성매매예방과 관련된 교육수강이나 강연참석 경험은 매우 제한적이었으며, 언론홍보 위주의 정보를 수집하는 정도였다. 성매매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에 대한 접촉도 성매매방지법 위반자 구속소식에 의존하는 정도였고, 정부나 여성단체 등에 의한 홍보활동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매단속이나 홍보활동에 대해서도 중단되거나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매유인환경에 노출을 분석한 결과 인터넷을 통한 여성노출 동영상을 보거나 포르노사이트에 접속한 경험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위성방송에서 여성노출장면을 보거나 성매매 홍보전단을 받아 보았거나, 친구나 동료들과 성매매 경험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상생활들 통해 성매매 유인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인식을 보면 성매매방지법의 시행이나 특별단속에 대해 인지하는 정도가 높으며, 성매매방지법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도 높게 나

타났다. 그러나 방지법의 추진효과에는 부정적인 견해가 높았으며, 성매매피해여성에 대한 보호조치 및 성매매 근절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 단속, 성매매 관련업자에 대한 처벌강화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는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성매매방지법 시행을 전후한 성인남성들의 의식변화를 보면 남성들의 성구매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비율이 높아졌으며, 업무성 성구매에 대해서도 부정적 인식으로 변화하였고, 성구매의 접근용이성도 낮아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여성들의 성매매가 자발적이라는 인식도 부정하는 측면으로 변화되었으나, 아직도 여성들의 성매매자발성을 긍정하는 측면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당시 언론에 나타난 성매매여성들의 시위장면에 대한 효과로 해석될 수 있다.

성매매방지법 시행이후 남성들의 성구매행위가 현저히 감소되었다. 방지법 시행이전에는 45.5%의 남성이 성구매를 했다고 했으나, 방지법 시행이후 21.3%로 감소되었고, 성구매자들의 성구매 빈도도 감소되었다. 이는 성매매 단속과 성구매자 처벌에 따른 효과로 볼 수 있다. 성구매 장소도 방지법 시행이전에는 성매매집결지가 주를 이루었으나, 방지법 이후 집결지는 큰 폭으로 감소되었고, 노래방이나 유흥업소, 안마시술소 등으로 변화되었고, 전화방, 보도방, 숙박시설에서 구매하는 경우도 있었다. 성매매방지법 이후 성구매를 중단한 사람의 비율은 25.3%인 반면 방지법 이후까지 성구매를 지속하고 있는 사람은 20.1%였고, 새롭게 시작한 경우는 1.2%로서 미미했다.

성구매 동기에 있어서도 술자리에서 어울리다가 성을 구매한 경우는 방지법 시행이후 감소되었으나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성적욕구의 해소를 위해서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는 방지법 이후에 오히려 성구매 비율이 증가하였다. 성인남성들은 성구매를 통해 욕구해소나 만족스러움을 느끼기 보다는 죄책감이나 성병에 대한 두려움 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구매경험이 없는 응답비율은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종교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 높게 나타났고, 성매매방지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을 경우, 성매매예방 홍보활동을 경험이 많을 경우, 성매매예방 활동의 효과성에 긍정적 평가를 할수록 성구매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매매방지법을 지지하는 경우, 성매매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할수록, 성매매환경에 노출이 적은 사람일수록 성구매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매방지법 시행이후 성구매를 중단한 경우는 연령이 3·40대에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배우자가 있거나 미혼인 경우 높게 나타났으며, 성매매예방교육 수강경험과 홍보활동의 인지와는 일관성을 보이지 못했다. 단지 성매

매매방화활동의 효과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거나 중립적인 태도를 보인 응답자들이 높은 중단비율을 보였다. 또한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인식이 잘 되어있거나 특별단속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의 성구매 중단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성매매방지법을 지지하거나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응답자들이 높은 성구매 중단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상에서 성매매방지법 시행이후 성인남성들의 성매매의식이나 행위변화의 결과를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일반인들의 성의식을 변화시키고 성매매예방 및 근절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매매예방 및 근절을 위한 교육이나 홍보활동이 집중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 및 여성단체, 시민단체 등에서 성매매근절을 위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들의 성의식 및 행위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학교교육과정이나 직장내 교육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지속적이고 일상적인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가장 효과적인 홍보수단은 언론매체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방법이다. 언론매체를 통한 연중 캠페인 등 지속적 홍보가 필요하다.

둘째, 성매매 및 구매행위가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성매매방지법 시행이후 성구매의 정당성이나 업무성 성구매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화되었으나, 아직도 성구매를 정당화 시키려는 사회적 인식이 불식되지 않는 것이다. 성매매 및 성구매가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확대·강조되어야 한다.

셋째, 성매매방지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 및 교육을 병행하여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성매매근절을 위한 대안으로서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응답자들의 비율이 높았다. 성매매방지법의 효과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남성일수록 성구매 경험이 없거나 중단한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 성구매를 하는 남성들의 경우 적발에 대한 두려움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성매매방지법 이후 새롭게 성구매를 시작한 사람보다는 지속적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한 의미에서 성매매방지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위반자에 대한 교육을 철저하게 하여 재발방지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넷째, 정부 및 자치단체의 성매매근절을 위한 중장기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수립된 정책에 의해 지속적인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사회의 성매매에 대한 의식은 일회성 홍보활동이나 단속으로 근절될 수 없다. 먼저 성매매가 범죄라는 인식이 확대되어야 하고 이를 근절시키기 위한 중장기적 정책이 집행되지 않고서는, 이른바 풍선효과에 의한 변종 성매매수법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성매매방지법 시행으로 성매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집
중단속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변종 성매매가 성행하여, 고전적인 의미
의 성매매는 감소되었으나, 음성적이고 새로운 형태의 성매매로 대체되고 있
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법집행
으로 그 실효성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끝으로 성매매방지를 위한 지역사회네트워크를 중심축으로 활용해야 한다.
성매매예방 및 홍보활동, 성매매근절을 위한 사회문제에 대해 지역사회 자원
들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자치단체는 행정적, 재정
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성매매방지법 시행 2년에 대한 평가

정미래(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1. 들어가며

성매매방지법시행 2년을 앞두고 성매매 관련 논란이 더욱 많아지고 있다. 성매매방지법제정과 시행 1년은 우리사회의 성의식과 남성중심적인 성문화에 영향을 주었으며 성매매에 대한 국민의식의 전환에 많은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2년을 맞이하면서 성매매방지법이 성산업을 축소시키려는 오�히려 더욱 음성적으로 확대시켰다는 주장에서, 성매매여성들의 생존권을 억압하므로 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또한 남서울대에서 집결지여성들을 상대로 실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성매매방지법 시행한 달 이후에는 오�히려 여성들이 집결지역으로 다시 돌아갔다(80%이상)면서 보건위생의 문제를 제기하였고, 성매매방지법이 졸속입법이었다면서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관리를 철저히 하는 방안을 내놓기도 하고 있다. 결국 성매매를 국가를 관여하지 말거나(성매매규제 반대/성매매 비범죄화), 합법화(성거래를 인정, 성노동자로 인정)시켜 달라는 주장에서 현행법이 규정한 성매매불법(여성에 대한 비범죄화)까지 다양하게 주장되고 있는 상태이다. 법시행 2년 만에 이런 다양하고 많은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성매매문제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대안을 모색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문제의 근원이 제대로 해결되지도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법을 흔들어대고 있는 상황은 법의 집행력을 떨어뜨리고 법을 사문화 시키게 되는 결과를 야기한다. 그러면서 마치 성매매문제가 해결된 것인 양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구체적인 실정과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국민들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성매매현장은 또다른 형태로 변화하게 된다. 법 시행 2년을 점검하면서 다시한번 성매매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문제를 원점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발전을 위한 모색의 길인 것이다. 성매매피해 생존자들과 여성폭력에 대항하여, 국가책임을 분명히 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여 성매매를 근절해나가는 운동을 전개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현시점을 점검하고 이후 방향을 함께 논의하고 실천해 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2. 정부정책에 대한 점검과 평가

1) 여성가족부

가. 국민이 체감하는 성매매 방지대책 추진

: 성매매방지 추진점검단 제8차 회의 운영(신·변종업소에 대한 단속 강화 방안 등) / 성매매방지 정책 법무부와 업무협약(성매매 사범에 대한 엄중처벌과 존스쿨의 내실화) / 경찰청장 업무협약(경찰의 집결지, 신·변종업소에 대한 단속강화) / 보건복지부 업무협약(마사지업소 성매매근절 방안) / 성매매단속 관련 쟁점업소 검토 전략회의 실시 / 해외 성매매방지대책 실무 협의(법무, 외교, 문광부, 해외성매매 및 인터넷 성매매단속 강화조치, 인신매매 방지 유관기관 대책회의, 경찰청휴게텔 단속- 신·변종업소에 대한 관리방식의 제도화 방안마련 등)

특히 변종해외,인터넷 성매매등 범정부적 단속을 추진하기우해 지난 3월 30일자 보도자료에 의하면 범정부적차원의 강력한 대응으로 성매매알선 연결고리를 차단해 나갈 것과 이를 위해 8차 추진점검단 회의에서 집중 논의하였다.

풍속영업전담반운영을 통한 스포츠 마사지업등 단속을 강화하여 상습적인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폐쇄조치등으로 성매매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인터넷성매매방지대책반의 사이버순찰활동을 강화하여 공개광고, 쪽지발송, 1:1대화, 성구매경험정보제공등 성매매알선에 대해 집중 단속하겠다고 한 것과, 해외 성매매 알선브로커에 대한 정보활동을 강화하여 존스쿨 내실화 방안으로 2005년 13개 기관에서 22개 기관으로 확대하여 운영하는 방안들이 논의되었다.

□ 전국 성매매업소 집결지역 폐쇄 · 정비 기반 구축

○ 지자체의 집결지 정비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집결지 정비를 위한 법률 제정 검토

○ 전국 집결지 현황조사 및 자활 지원 사업 확대(9개 →12개)

○ 지자체에 대한 '성매매 클린지수' 평가 실시

□ 퇴폐 이발소 · 안마시술소 · 노래방 등 변종업소에 대한 제재 강화

- 형사처벌 외에도 소방, 세무, 위생, 허가 취소 등 각종 행정적 기능을 전방위적으로 활용한 통합 제재방안 마련
 -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적극 활용
- 불법·퇴폐업소 신고 활성화를 위한 ‘시민감시단’ 등 결성 지원 (전국 8개 광역)
- 인터넷 유해사이트 등 성매매 초기 유입경로 차단
 - 인터넷 채팅사이트 및 1:1 쪽지 교환 등을 통한 성매매 제의 및 알선행위 적발(경찰사이버수사대)
 - 스팸 메일, 유해사이트, P2P 등 분야별 차단기술 개발 및 고도화 추진(정보통신윤리위원회)
- 성매매 방지 국민의식 개선사업의 효과성 제고
 - 성문화 의식개선 캠페인 지속 실시 및 전국 확산
- 대상별 성매매 예방교육 활성화
 - 군장병, 초·중·고교생 예방교육 강화(국방부, 교육인적자원부)
 - 탈성매매 담당 지자체 공무원 교육 및 워킹샵 실시

나. 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사업의 효과성 향상

- 탈 성매매 여성의 정서회복과 기초소양 함양 중점 지원
 - 실효성 있는 자활지원 프로그램 개발·활용
 - 취업·창업을 위한 준비과정 강화
 - 적성테스트에 의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외부 지원기관 연계 강화를 통한 취업지원 활성화
 - 여성경제인 단체, 주요 기업, 노동부 등과 협력체계 구축
 - 자활지원센터에 「공동작업장」 시범운영(생계비 지원)
 - 성매매피해여성 자활지원을 위한 국제적 네트워크 활용
 - 자활 TF 구성하여 자활대책전략회의 진행
- 성매매여성 시설입소 활성화를 위한 쾌적한 생활여건 조성

- 자활 여성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그룹 홈 확충(4개소 → 8개소)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확충 및 기능보강
 - 지원시설 : '05년 39개소 → '06년 41개소 지원(현 40개소)
 - 상 담 소 : '05년 18개소 → '06년 26개소 지원(현 28개소)
- 2006년 창업자금지원(6월-) / 2005년 9개업체 지원

평가

성매매방지점검단을 가동하여 성매매방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정부부처의 지원과 협조를 총체적으로 이끌어 가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여성가족부는 성매매방지 정책의 중장기적인 전략목표를 가지고 정책을 생산하면서 성매매방지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유지하면서 성산업을 축소시키고 나타나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정책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 나갈 책임이 있는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정책은 1년 단위의 단기적인 성과위주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랜 기간의 논의를 통해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방향을 제대로 정착시켜 나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는 정부정책 담당자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 및 문제의식의 한계와 동시에 종합적인 대책을 정부 각 부처가 하나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업무의 분산과 담당자들의 전문성의 부족 등 총체적인 문제로 인해 성매매방지정책이 위상을 잡아가지 못한 상황이다. 결국 성매매문제를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의 문제, 예산의 문제로만 바라보게 하는 한계를 노출시킨다. 또한 언론이나 여론을 주도하지 못하고 사안사안등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에만 집착하여 성매매정책을 이끌어 나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시민감시단이나 지자체 클린지수등은 오히려 지자체의 성매매방지정책의 주도성과 주체성을 이끌어내기 보다는 일을 하나 더 늘린다는 식으로 받아들이게 하고 있다. 이는 근본 문제해결을 위한 장기적인 전망과 일관성 있는 정책집행력을 높이지 못하고 성과나 실적위주의 사업에 집착하게 하는 문제를 낳게 한다.

2) 법무부 : 법무부 종합대책

가. 성매매사범 보호관찰지침 마련

■ 보호관찰

○ 성매매의 반인권성 교육 및 심층면담, 현장지도 등 지도감독을 통해 재범방지

○ 성판매 여성에 대해서는 재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쉼터 등 보호시설 적극 알선 및 직업훈련 지원

○ 보호관찰 전·후에 성매매 인식도 조사를 실시, 인식의 변화 정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

■ 수강명령

○ 강의, 집단토론, 영상비디오 상영, 소시오 드라마 등 참여적·활동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성

○ 지역사회 전문가를 참여시켜 교육적·치료적 기법을 적용

나. 유관부처와 유기적 네트워크 형성

○ 법무부(보호국)와 여성부(권익증진국)의 4~5급 실무담당자 정례 간담회 개최 등 협의체계 마련

- 보호관찰 성매매 여성에 대한 보호시설 입소, 직업훈련 및 의료지원 등 실질적 사회적응 지원 방안 협의

- 효과적인 수강명령 교육프로그램 마련, 전문강사 양성 등 공동 추진

다. 교육용 교재 개발 및 확보

○ 성매매사범 교육용 팸플릿 제작

- 성매매법 제정 취지, 성매매의 심각성(폐해), 보호관찰 준수사항, 사회적응지원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

○ 성매매 관련 시청각자료 등 교재 확보

- TV 시사·교양프로그램 및 시민단체 제작 시청각 자료의 광범위 수집

라. 성매매사범 전담직원의 전문성 강화

- 성매매 전담직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워크숍 개최
 - 성매매의 반인권성 교육, 사회적응력 제고 방안 등
- 성매매피해자 상담전문가과정 등 대학·민간 운영교육프로그램 적극 참여

마. 법원·검찰과 협조관계 구축

- 보호관찰소장, 보호관찰관이 법원의 책임법관, 검찰의 전담검사를 방문, 성매매사범 보호관찰 실시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보호관찰처분 적극 활용 유도

바. 사이버 상담실 개설

- 보호관찰홈페이지에 성매매 보호관찰대상자와 전담 보호관찰관이 상담할 수 있는 사이버 상담실 개설
 - 대면 상담시 대상자의 수치심으로 걱정지도가 곤란한 경우에 대비, 사이버 상담을 병행함으로써 문제해결 능력 향상
- 홈페이지에 전문적 상담기관으로의 자동 링크 기능을 설정하여 성매매 피해, 진로 등에 대한 심층 상담 지원

사. 평가 세미나 개최 및 지도사례집 발간

- 성매매사범 보호관찰 1년경과 후, 보호관찰·수강명령 프로그램 운영 평가 세미나 개최
 - 보호관찰관별 우수·실패 지도사례 발표, 효과적 프로그램 운영 방안 등
 - 우수·실패 지도사례집 발간, 전국 보호관찰기관에 배포하여 성매매사범 보호관찰 집행능력 상향평준화 도모

법무부 여성정책담당관실

법무부내 여성관련정책의 수립, 조정, 총괄 및 시행 /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법무부 소관 법령제도의 개선 / 여성 관련 시책의 추진을위한 다른 부처와의 협조의 임무를 가지고 있다. 2005년도에는 성매매관련 지원단체 간담회를 개최하였고(본부 및 전국지검, 지청단위로 34회 개최) / 여성가족부와 공동으로 3차 국제인신매매방지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였다. 2005년 8월에는 성구매자에 대한 재범방지 교육방안을 도입하여 전국의 보호관찰소에서 성구매초범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기소유예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2006년에는 여성관련 범죄 수사과정에 대한모니터링설문지를 분석 평가하여 수사관행에 대한 개선 정도를 점검하는 것과 존스쿨 프로그램의 정착을 위한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발굴 지원함을 중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성매매처벌법의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성매매관련 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새로운 신변종성매매에 대응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인신매매문제에 대한 대응이나 해외 성매매문제등 산적한 사안에 대해 적극대응하지 못함으로 인해 인권보호 및 법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

구속수사기준에 관한 지침에 성매매사범도 포함(2006년 6월)

처벌법 집행과정과 집행의 실효성 방안

1. 검찰의 기본원칙

- 성매매알선강요등 성매매의 매개조장행위 엄단
-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성매매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통한 재범방지
- 청소년 성매매범죄에 대한 엄단
- 성매매피해자를 보호하고 신속히 성매매를 탈피하여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 범죄수익의 몰수, 추징을 통한 범죄유발요인 제거
- 수사 및 처리과정에서 성매매여성의 인권보장

2. 사건처리과정

- 1) 성매매알선행위자에 대한 처리 (기본적으로 구속수사)/범죄단체구성원의

성매매범죄/성매매목적의 인신매매사범/ 강요, 알선행위자

2) 단순 성매매 알선 사범에 대한 탄력적 처리

-죄질, 사안의 경중, 범행경위등을 참작하여 불구속 수사가능, 구속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죄질이 나 사안의 경중에 따라 불구속 수사가능

3) 성매매알선행위의 광고및 광고물 제작. 공급행위자

-죄질, 사안에 따라 처리

-광고의 음란성, 광고제작, 기간, 전과광고매체의 종류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죄질이 불향한 제작배포 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4) 성매매행위자에 대한 처리기준 및 절차

-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 원칙적으로 불구속수사/초범인 성구매자는 존스쿨 이수 조건으로 기소유예처분

-존스쿨 처리 절차 : 초범인 경우/ 재범은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또는 정식 보호사건으로 송치

5) 법원단계

- 판결 ;양형의 문제

- 하급심에서 법적판결이 다른 것 (유사성행위문제)

- 보호처분

3. 성매매처벌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사범에 대해서는 징역형과 벌금형의 범죄수익 박탈 차원에서 벌금형 병과 규정 적극 활용(법 24조)

나. 형사입건 된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문제

- 성매매피해자를 불처벌하고 성매매피해자를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음

- 고소, 고발사건 수사시 선불금의 성격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사기피고소 시 상담원의 동석 및 성매매사건으로 처리하는 문제

- 성매매여성을 수사기관에서 소환하거나 조사할 때 신변보호와 상담원동석 규정 ,노출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함

- 법원에서 여성을 증인으로 채택 시 증거보전 제도 등 적극 활용

-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적극 해석

다. 성매매업소집결지역에 대한 확대와 지속적인 단속강화

경찰은 2006년 4월 27일 전국 24곳을 성매매적색지역으로 지정하여 집중단속을 한다고 하였다. 성매매집결지역이 사양화되고 신·변종 성매매업소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들 업소들이 몰려있는 전국 24개 지역을 지정하고 지방

청 별로 특별관리에 들어간다고 한 것이다. 주로 안마시술소, 유사성행위업소, 휴게텔, 퇴폐이발소등 신·변종 성매매업소가 밀집해 있는 지역위주로 선정하였고 강력히 단속한다고 하였으며 최근 경찰자료에 의하면(6월12일-6월18일)검거된 572명중 집결지에서 검거된 사람은 34명, 신변종업소와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과정에서 적발된 사람을 538명으로 나타냈다. 또한 6월12일부터 50일간 전국 성매매업소를 집중 단속하여 14,688명을 입건했다고 발표하였는데 이중 3분의 2가 신·변종 성매매업소에서 적발된 사건이다.

평가

처벌법 시행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범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마련이 부재하고 인신매매, 해외성매매, 성매수자에 대한 처벌등의 대안마련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존스쿨이 성매수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식으로 운영되는 문제와 여성에게는 처벌을 강화하는 형태로 운영되면서 보호관찰소에서 원래의 법 취지에 맞게 집행되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존스쿨 8시간이수/성매매여성은 20시간-80시간 수강명령형태) 또한 존스쿨을 보호관찰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성매매여성들까지도 존스쿨에서 교육받게 하는 경우라든지, 심지어 알선업자와 함께 수강명령이 집행되기도 한다든지, 프로그램운영의 문제(소시오드라마 운영의 문제등), 초범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질문지에 반여성적인 질문구성의 문제등이 제기되고 있다.

그 외 성병 및 여성건강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본부, 단속의 문제에 있어서는 경찰, 소방 및 건축물관련해서는 지자체(행자부), 주거지원 은 건설교통부, 신용불량과 파산관련 해서는 재경부, 취업 및 일자리 관련해서는 노동부등 각각에 걸쳐있는 정부부처의 내용을 통합적으로 운용하고 있지 못하다. 신변종 성매매업소에 대한 단속의 문제에 있어서도 풍속영업과 식품위생으로 행정처분을 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성매매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한계로 인해 등록된 업소 및 미등록, 불법영업등에 대한 제제조치가 실질적으로 미흡한 상황이다. 결국 이런 과정으로 인해 음성형 성산업이 더욱 확대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낳고 있다. 업소폐쇄조치를 비롯한 행정처분 강화와 성산업을 수요를 차단시킬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3. 피해생존자들에 대한 지원과정

상담소, 지원시설, 그룹홈, 자활센터, 집결지사업등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원은 개별적으로 1인당 얼마씩 지원이 된다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

다. 문제는 법률, 의료지원이 일정 정도 자리를 잡아 시스템화 된다고 할 때 이후 자활과 자립의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대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이다. 이는 일차적으로 재유입을 예방하는 차원과 자활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일정기간과 자원의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다각적으로 지역사회 자원을 이끌어내고 활용 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개별단위나 단체가 성매매피해자를 지원하는 활동을 한다고 할 때 전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원이 너무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미 부족한 자원중에서도 성매매여성에게 쓰일 수 있는 자원은 더욱 부족한 상태인데 이를 개인과 개별기관이 해결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어떻게 이 자원을 끌어와서 분배할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과 내용이 필요하다.

4. 법 시행 2년의 긍정적인 측면

(1). 종합적인 지원체계의 확보

1) 성매매피해상담소 : 성매매업소에 있는 여성들에 대한 현장방문 상담, 법률, 의료지원등을 통해 성매매강요 및 인권유린상황에 조기에 개입하고 피해자를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등에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상담기관으로 2006년 현재 전국에 27개가 있다

2) 지원시설 : 일반지원시설(25곳) 청소년지원시설(15곳), 외국인여성지원시설(3곳), 자활지원센터(3곳)들이 있다.

3) 집결지 자활지원사업 : 집결지성매매여성의 탈성매매와 자활을 지원함으로써 성매매여성의 사회복귀와 나아가 집결지 정비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2005년 12월 전국 9개 지역에서 진행하였고, 2006년 현재 12개 지역에서 수행되고 있다. 아웃리치, 상담활동 및 각종 프로그램운영, 법률, 의료지원과 긴급생계비지원, 직업훈련을 통한 취업준비과정 지원, 지원종료 후 지원시설 및 자활지원센터로 연계유도등을 실시한다.(지역협의체를 구성하고 간담회등을 진행한다)

4) 창업자금 지원사업 : 직업훈련이수등으로 자활 의지가 검증된 성매매피해여성에 대한 창업자금지원으로 자립을 지원한다. 사회연대은행에서 위탁사업

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1인 3천만원이내 지원되며 융자금은 1년거치 3년상환 조건이고 총 4년 동안 무이자로 사용할 수 있다. 2004년 11개업체, 2005년 9개업체가 지원되었고 2006년 현재 사업이 6월에 이어 10월에 재신청을 받고 있다.

5) 피해자구조·지원사업 : 피해자에 대해 구조에서 자활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원하며 성매매로의 재유입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선불금등 채무문제법적해결,신체적,정신적질환에대한 의료비지원, 취업 및 창업을 위한 직업훈련 및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등으로 진행된다.

6) 신용회복 지원사업 및 취업안내센터운영 : 탈성매매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적극 지원하기위해 여성가족부와 신용회복위원회가 2005년 3월 16일 ‘탈성매매여성신용회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신용회복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 취업안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 대상과 유형에 맞는 지원서비스
 - 법률,의료,생계,주거,원스톱시스템확보등
- 자활사업이 현실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 자활지원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회적일자리, 공동작업장운영

(2). 여러가지 판례들

- 선불금 무효관련(금융거래로 위장된 선불금(2005년 4월 / 담보없이 거액을 대출해 주었다는 점은 금융대출을 선불금으로 판단하게 된 주요한 이유), 맞보증관련, 사채업자등 제 3자에 의한 선불금, 선불금을 갚기 위해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 처벌 등)
- 불법수익에 대한 몰수, 추징(안마시술소의 불법수익에 대한 몰수추징액 3억 판결)
- 장소제공과 개인 재산권문제(집결지 건물주인이 낸 헌법소원에 대한 기각 판결)
- 유사성교행위에 대한 판결
-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국가배상/업주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등)
- 광고행위에 대한 처벌

5. 법시행 2년의 문제점

1) 집행에 대한 문제

- 일차적으로 경찰단속의 문제(일상적이고 지속적이지 못하다, 적극적인 기획수사와 내용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 여성이 처벌되고 있는 문제, 알선자에 대한 처벌이 약한 문제, 업소에 대한 단속이 증거위주로만 이루어지고 미수범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없는 문제등으로 인해 법의 집행력이 약화되고 있다. 법집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판례를 모아 개정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특히 신·변종 성매매에 대응하는 부분에 대한 조치의 미흡과 강력한 집행의 부재가 성산업규모를 계속 확대시키는 부정적인 효과로 작용하고 있다.

- 인터넷 성매매관련 : 관련 사이트에 대한 처벌이나 폐쇄의 문제 (클럽****, 채팅사이트) 포털사이트에 대한 단속 및 광고주에 대한 처벌강화등

2) 검찰과 사법기관의 문제

검찰에서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해석을 좁게함으로써 강요나 위협등을 피해자가 증명하거나 입증하도록 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행위자로 처벌하고 있다. 이는 법정신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며 나아가 법에 명시된 상당원 동석에 대해서도 각 지청별, 검사별로 일관성 있게 보장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들이 여전히 힘들게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런 검찰의 소극적인 법집행과정은 재판부의 소극적인 판결과도 연관이 되는데 이는 알선범죄자나 구매자에 대한 처벌이 여전히 유행법시대와 별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법집행과정의 이러한 경향은 성매매문제를 여전히 중대한 조직범죄로 보지 않고 단순범죄로 취급하는 검찰과 사법부의 의식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 법제정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3) 보호정책의 문제

-자활정책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마련

-성과와 실적위주의 정책이 아닌 인권을 보장하는 일관성 있는 정책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전문단체를 포함한 종합대책점검단이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성매매여성들을 위한 의료,법률,주거,생계등의 종합지원대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4) 그 외 제기되는 문제들

- 성매매, 인신매매의 수요적 측면에서 성구매에 관한 문제를 접근하는 것
- 인신매매방지법에 대한 접근(현행 부녀매매로는 규율할 수 없음)
- 업소를 폐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행정처분, 지역적 조례제정, 지역운동 등)
- 여성을 처벌하는 문제
- 알선고리차단 및 성 수요억제 및 차단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에 대한 고민
- 성매매에 대한 다양한 논란의 문제

경제학적관점에서 제기되는 문제 : 경제학적관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주장에 대한 정책은 공급과 수요차단에 대한 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

성병관리에서의 문제 : 성매매방지법으로 인해 성병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바이러스성성병감염이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고경화의원실)

6. 마치며 : 성매매근절 운동의 방향은

세계화와 더불어 자본축적이전 지구적으로 보다 가속화 되면서 생존권에 위협을 받는 사람들은 더욱 빈곤하게 되고 주변으로 몰려 나가고 있다. 이주노동이 일반화되고 있고 전지구적 시민권문제, 사회적 생계임금의 문제, 자연과 사회환경 및 생태적 권리에 대한문제등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여성의 빈곤화, 빈곤의 여성화는 더욱 가속화되어 현재 우리나라 여성취업자중 70%이상이 고용이 불안한 비정규직이다. 여성들의 빈곤화는 가정의 문제와 가족해체등을 일으키고 겨우 생계만을 유지할 정도의 수입은 결국 빈곤을 되물림 하게 되고, 벗어나기 힘들게 만들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자리잡고 있다. 이런 과정에 유독 성산업이 호황을 누리면서 상품가치가 있는 젊은 여성들을 유인하는 것은 결국 돈 있는 성인남성(성적욕구를 해소하기위해 정당한 거래인 양 위장된 채, 자신의 남성성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여성의 성을 합법적으로 착취할 수 있는 권리는 경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성인남성에게 부여된 권리처럼 포장된다)을 상대로 부의 재분배의 장으로 이용되기 때문이다. 사회적으로 공정한 분배와, 생산에 참여하여 노동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되어야 한다. 내가 먹고 살길을 노예상태로 선택하고 동의했으니 각각의 선택권과 차이를 인정하여 성매매를 인정하라는 주장은 동의될 수 없다. 오히려 성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고 묵인 방조 한 국가책임을 분명히 하면서 국가가 문제해결을 위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대책을 요구해나가는 것이 정치적으로 올바른 방향이다. 현장을 잘 모르는 일부연구자들은 성매매현장이 현재 성매매업소집결지(소위 성매매만을 하는 전통형)와 산업형 성매매집결지(1차적인 영업형태에 2차로 성매매를 하는 겸업형)로 분리되어 있어서 성매매업소집결지(경찰청 자료 전국 35개 지역)의 업주와 여성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성거래를 인정하고 성노동자로 인정하는것이 여성인권을 보장하는것처럼 주장한다. 그러나 성매매현장은 이렇게 단순하게 나뉘지 않고 있다. 여성들은 상황에 따라 집결지에 있다가 어느때는 산업형으로 이동하고 업종을 넘나들고, 지역도 전국을 넘나들면서 심지어 해외로 이동하고 있으며 영업형태 또한 별반 다르지 않다. 이것은 성산업 구조자체가 업소의 형태와 상관없이 성매매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경계를 정할수도 없을뿐더러 성산업구조 안에서의 여성들에 대한 위계화는 그들 자신들 세계에서 위계화이지 피해상황은 별반 차이가 없게 나타난다. 오히려 성매매 구조안에 얼마정도의 노출되어 있는가(기간)와 그 업소에서의 폭압적인 상황과 경험의 정도(영업형태, 지역등)에 따라 여성들 마다 성매매에 대한 경험과 접근방법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을 뿐이다. 이는 개별적인 지원과 치유의 과정이 달라져야 하고 개인에게 맞는 방식으로 회복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으로 개인에게 맞는 맞춤형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근거가 된다. 성매매피해생존자들의 지위를 인정하면 정책은 달라진다.

필리핀 법률은 또한 여성을 위한 기회 창출에 있어 정부의 책임을 강조한다. 빈곤과 성차별이 여성을 성매매로 내모는 한 요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법에 따라 정부는 피해자에 대한 위기 개입 지원 뿐 아니라, 고용 기회를 제공하고 공교육에서 성평등 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

또, 모든 정부 부처는 이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정부 부처간 인신매매 방지위원회(inter-Agency Council Against Trafficking)'라는 감시 기구에 참여해야 한다. 아동권리, 여성, 이주노동자 등 세 곳의 NGO 대표가 이 위원회에 참여한다. CATW-AP는 여성단체 대표로 지명되었다.

국내외 인신매매의 주요 종착역인 성매매와 싸우면서 우리는 가해자들은 모두 똑같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들은 간절히 일자리를 구하는 젊은 여성들의 열망을 이용할 수 있음을 알고, 꿈과 상처투성이의 삶을 지닌 젊은이들을 모집하면 돈벌이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업가들이다. 따라서 우리는 법안을 마련하면서 성매매를 위한 인신매매의 한 방법으로 '취약성의 악용'을 포함시켰다. 강제, 유인, 사기 및 기타 방법들은 여성의 현실과 그들이 착취당하는 기제를 반영하지 못한다.

인신매매는 착취를 목적으로 한 인력 모집, 송출, 은신, 보유 또는 구매 등을 포함하기 때문에 정의상 성매매도 인신매매이다. 이러한 행위는 성매매에 연루되기 때문에 여성과 아동을 착취하는 자는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처벌된다. 여기에는 착취할 목적으로 개인을 고용 또는 보유하는 성매매 관리책임이나 시설 소유주 등 착취의 목적으로 개인을 사는 구매자가 포함된다. (2005. 성매매방지법시행1년 토론회자료집/ CATW)

문제는 성구매 수요를 창출하고 있는 불평등하고 차별적인 문화나 의식 및 산업구조등으로 인해 취약한 상태에 놓인 여성과 청소년들이 성매매로 내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해 나갈 것인가이다. 성산업규모를 축소해 나가면서 수요를 차단시키고 성을 구매하는 행위가 범죄행위임을 확인시켜내기 위해서는 알선업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도 확실하게 집행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찰, 공무원 및 정부관계자, 사업관련관계자들에 해한 교육과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인식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나아가 여성들에 대한 비범죄화가 주요하게 달성되어야 하고,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강력한 집행력을 담보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결국 성매매피해생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확대, 불법업소에 대한 폐쇄조치, 성구매자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통한 수요차단정책이 강력하게 실시되어야 효과가 있을 것이다. 빈곤과 성매매로의 유입 및 재유입구조를 차단하기 예방교육 및 활동과 의식전환프로그램개발 및 남성들을 상대로 하는 구체적인 교육과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성매매현장을 벗어난 성매매피해생존자들이 피해를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먹고 살 수 있는 좋은 일자리 만들기(일정기간은 보호된 공공성 있는 일자리를 보장해야한다)와 지속적인 지지기반을 확보해나가야 한다.

탈성매매 여성 자활지원 성과 및 대안 모색

송경숙(성매매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대표)

I. 들어가며

2004년 9월 성매매방지법¹⁾이 집행되면서 국가가 책임지는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구조부터 자활까지의 탈성매매 자활지원을 위한 보호체계 구축, 예산확보를 통한 지원정책이 확대되고 있다. 이는 윤락행위등방지법 시기에 성매매 문제를 여성개인의 도덕적 타락의 문제로 인식하여 여성들에 대한 선도보호정책으로 여성복지상담소 운영과 선도보호시설 강제입소를 통한 선도보호 및 직업훈련을 하던 정책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이다.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여성들에 대하여 성불평등한 구조에서 여성의 성을 성적 상품화하고 매매하여 이윤을 착취하는 알선구조 및 성구매 행위 즉 성산업 수요에 의한 피해자²⁾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구축되고 있는 보호체계는 성매매피해상담소, 집결지자활지원센터, 지원시설(쉼터, 그룹홈, 자활지원센터) 등이고 탈성매매 자활지원 사업의 내용은 집결지의 생계비 지원을 비롯하여 법률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심리치유 지원, 직업 훈련비 지원 및 창업지원을 포함한 자활지원 등이다. 이러한 지원정책이 기반이 되어 많은 여성들이 성매매 아닌 삶으로의 대안을 찾으며 다양한 시도를 통한 자활의 길을 걷고 있다.

우리사회 성매매 문제의 복잡성 만큼이나 여성 개개인이 안고 있고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는 매우 복잡적이고 장시간을 요하는 일이다. 따라서 자활지원 정책은 여성 개개인의 위기지원 및 문제해결을 통한 대안적 삶의 토대와 가능성을 만들고 다양한 준비와 시도를 통해 경험을 축적하고 심리적/내적, 물리적/외적 자원 확보를 통한 empower의 과정이 될수있어야 한다. 이를

-
- 1)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안’(처벌법)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안’(보호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호법’은 성매매여성들의 ‘구조부터 자활까지의 탈성매매 자활지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 2) 현행 성매매방지법의 ‘처벌법’은 성매매여성들을 강요에 의한 피해자와 자발적 행위자로 구별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비범죄화는 이루어졌지만 자신이 피해자임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못해 행위자로 처벌받는 여성이 있는 법적 한계는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할뿐만 아니라 여성들에 대한 도덕적 낙인을 지속시키고 있다는 비판적 시각이 있다. 이에 대해 반성매매 운동 단체는 ‘성매매여성의 비범죄화’를 위한 법개정 운동을 주요한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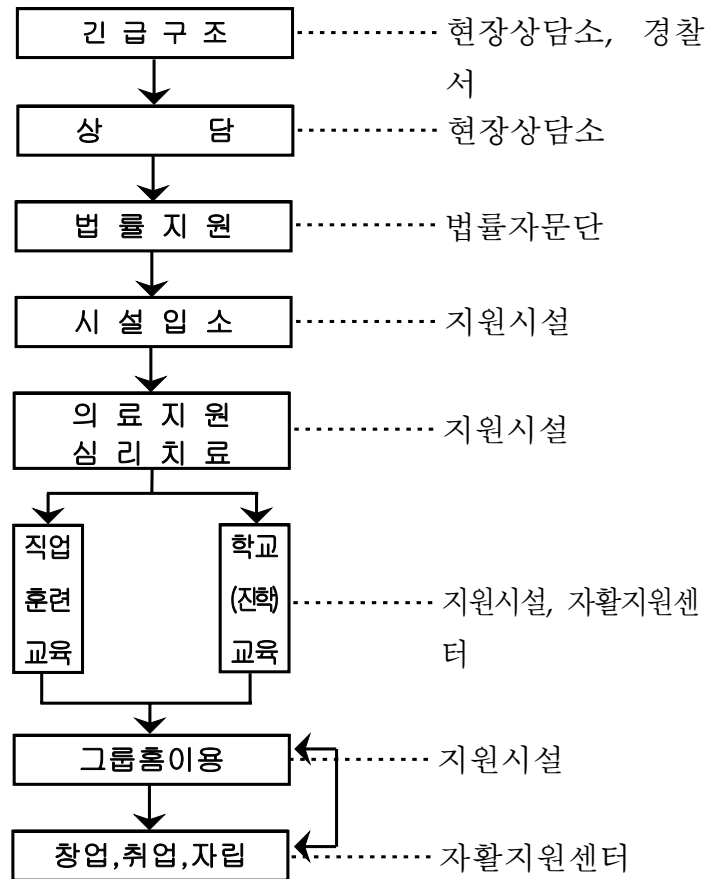
위해서는 개별적이고 단계적인 지원이 가능한 통합지원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탈성매매 여성이 일상을 보내며 함께 살아갈 지역사회와의 통합적 자원 확보 및 네트워크 강화도 반드시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가 성적 이중규범³⁾에 갇혀 성매매문제의 책임을 성구매 수요를 재생산하는 알선구조와 성구매자에게 묻지 않고 성매매 여성에게 전가하는 도덕적 낙인을 극복할 수 있는 사회적 인식변화를 가져야 한다.

본 발제는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실시되고 있는 탈성매매 여성에 대한 자활지원 정책의 현황 및 성과를 살펴보고 향후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3) 우리사회에는 ‘성매매는 필요악’이라는 성본능론에 입각한 사회적 통념이 지배하는데 남성의 성적욕구를 위해 필요한 성매매가 여성에게는 악한것이 된다. 가부장제 사회에서는 남성에게는 경계없는 섹슈얼리티가 '남성성'으로 여성에게는 억압하는 섹슈얼리티가 '여성성'으로 구성된다.

1.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탈성매매 자활지원 체계 현황⁴⁾

▶ 탈성매매 국가 지원 체계도⁵⁾



가.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 목적 : 성매매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숙식을 제공하고 심리안정, 인성변화, 진학 및 취업교육, 직업알선 등 자활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
- 시설의 종류 : 일반 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여성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 시설의 현황⁶⁾ : 일반/25개소, 청소년/15개소, 외국인/3개소, 자활지원센터/3개소
- 자활지원센터 : 전업준비관련 기초작업, 취업 및 기술교육, 일자리제공(공동작업)

4) 2006,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사업 지침, 여성가족부

5) 2004, 성매매방지종합대책안, 여성부

6) 2006년 6월 30일 현재, 여성가족부

장 운영),창업지원, 취업 창업자 사후관리

- 그룹홈 :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등에 입소(이용)하고 있는 여성 중 자활능력을 갖춘 여성에 대하여 일정기간 주거를 지원을 함으로써 탈성매매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함

나. 성매매 피해 상담소 운영

- 목적 : 성매매업소에 종사하는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현장방문상담, 법률.의료 지원, 등을 통해 감금.성매매 강요 등 인권유린 상황에 조기 개입하고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등에 연계 역할을 수행
- 상담소 현황 : 28개소
- 상담소 업무 : 상담(현장방문상담).지원업무 및 실태조사 , 관련기관.시설 및 자활지원. 의료. 법률 서비스 연계망 구축 , 외국인 피해여성 상담 및 지원 연계 , 홍보사업

다. 여성인권 중앙지원센터 운영

- 목적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상담소 등 제 시설의 균질적 발전을 지원하고 시설간 네트워크 구축 및 상담원 양성 등 서비스 제공 인프라를 강화함으로써 효과적인 탈성매매 지원
- 사업내용 : 탈성매매 지원 프로그램 개발, 각종 매뉴얼 및 지침서 제작, 여성인권 보호관련 법,제도 개선 및 정책대응 활동, 시설 및 상담소 간 협력과 지원체계 구축, 의료, 법률 등 관련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전국연계망 구축 , 성매매 인신매매 관련 국제연대 및 국제 협력망 구축과 교류 , 상담원 양성교육 및 전문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 활동가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등

라. 성매매업소 집결지 자활지원 사업

- 목적 : 집결지 성매매 여성의 탈업소와 자활을 지원함으로써 탈성매매 여성의 사회복귀와 나아가 집결지 정비기반을 마련
- 기본운영방향 : 전국의 모든 집결지를 사업대상으로 하되, 시행지역은 지역여건

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 탈성매매 및 자활을 위한 사전 준비과정으로서의 역할에 중점(최장 1년간 한시적 지원), 사업수행 점검 및 평가의 정례화와 평가결과의 환류, 지방자치단체.경찰.소방서 등 지역내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 주요 사업내용 : 심신치료 및 정서회복 , 탈업소의 장해요인 제거(법률지원, 신용회복지원등), 자활기반 마련(직업훈련 지원), 수입활동 중단에 따른 생계지원금 지원 , 지원 종료와 함께 지원시절, 자활지원센터 등에 연계 유도 등
- 사업현황 ; 12개 지역 실시7)

마. 성매매피해자 구조 지원사업 (복권기금)

- 목적 : 성매매피해자에 대하여 구조에서 자활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원하여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성매매로의 재유입을 방지, 선불금 등 채무문제 법적해결.신체적 정신적 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 취업 및 창업을 위한 직업훈련 및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
- 사업내용 : 피해자 1인당 760만원 한도 내에서 법률, 의료, 직업훈련비 통합 지출

- (1) 법률 지원사업 : 성매매 피해여성의 선불금 등 법률문제 해결을 위한 비용지원(증거수집비 및 변호사 선임료 등) / 상담소 및 지원시설
- (2) 의료 지원사업 : 성매매피해자에 대하여 각종질병 등 치료를 위한 치료비를 지원 ,의료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의료항목에 대한 의료비 지급/ 상담소 및 지원시설
- (3) 직업훈련 지원사업 : 지원시설 입소자에 대한 직업훈련비 및 검정고시 교육비 지급/ 지원시설, 집결지 자활지원사업
- (4) 성매매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지원 :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단순한 보호조치에서 나아가 심신의 안정과 치유, 구체적 목표제시,취업 창업에 대한 지원 등 종합적인 자활대책이 포함된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피해자가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립.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시설 및 집결지 자활 지원사업

7) 2006년 5월 현재, 여성가족부

바. 탈성매매여성 신용회복 지원 사업

- 목적 : 탈성매매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와 신용회복위원회가 2005년 3월 16일 ‘탈성매매여성 신용회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 운영
- 지원내용 : 상환유예, 분할상환, 이자면제 등

사. 성매매피해자 창업자금 지원사업

- 목적 : 직업훈련 이수 등으로 자활의지가 검증된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창업자금 지원으로 실질적인 자립 및 자활토대 마련
- 지원대상 : 자활의 의지가 높고 창업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로써 해당시설장의 추천을 받은자
- 지원내용 : 1인 3천만원 이내 지원, 융자금은 1년 거치 3년 상환 조건 / 위탁사업으로 진행(위탁기관: 사회연대은행)

▶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⁸⁾ 2006년, 탈성매매 통합지원 내용

프로그램 명	내 용	체 계
1) 현장지원(접근)서비스 (drop-in-servi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지원 의약품, 생리대, 식품 등 ▶ 정보제공 건강과 질병에 관한 정보, 법률정보, 상담 및 지원체계정보 ▶ 탈성매매를 위한 집결지 현장방문상담 및 상업지역 주거지방문, 심야캠페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상담센터 →선미촌 자활지원사업 팀 ‘두드림’
2) 긴급지원서비스 (crisis intervention servis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구조, 위기개입 상담서비스 현장출동/전화/면접을 통한 여성주의적 심리 치료,문제해결 상담 ▶ 무료법률지원 / 법률지원단 불법원인으로 인한 채무관계(선불금)관련 법 률상담,고소고발상담, 소송상담 및 사건 진 행 및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상담센터 →선미촌 자활지원사업 팀 ‘두드림’

8) 사단법인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는 성매매여성의 인권보호 및 자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인권운동 단체로서 부설기관으로 현장상담센터, 쉼터, 자활지원센터, 선미촌 집결지 자활지원 사업팀 ‘두드림’ 이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지원 / 의료지원단 치료위탁 및 치료비 지원 ▶ 쉼터 및 서비스연계 쉼터 및 치료기관, 수사기관, 법률지원기관 등 ▶ 생계비 지원 ▶ 신용회복 지원사업 	
3) 탈성매매를 위한 지속상담 및 동료상담 역량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성매매를 위한 지속상담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 동료집단 프로그램 ▶ 자활을 위한 지원사업 동료상담원 교육, 자조모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상담센터 → 쉼터 → 자활지원센터
4) 주거지원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식 지원 (일시보호 및 중장기 지원) ▶ 개별적인 상담 및 집단상담을 통한 심리치유 프로그램 지원 ▶ 물품지원 ▶ 긴급생계비 지원 ▶ 의료지원 ▶ 직업재활지원 	→ 쉼터 / 그룹홈
5) 일자리제공 및 자활지원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재활상담 및 교육훈련 지원 ▶ 사회적일자리 운영(노동부, 인건비 지원) ▶ 문화예술프로그램 지원 ▶ 공동작업장운영(여성가족부, 인건비지원) ▶ 공부방 운영 ▶ 취업 및 창업지원 ▶ 사후관리 	→ 자활지원센터

2. 통합지원 체계 평가 및 향후 대안

가. 각 시스템의 특성화에 기반한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과 연계체계가 강화되어야 한다.

(1) 집결지 자활지원사업 : 집결지 폐쇄정책과 함께 집결지 여성들에 대한 자활지원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집결지의 폐쇄에 대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를 근거로 여성들에 대한 자활지원사업의 로드맵이 마련되어야 한다. 생계지원비를 제공하면서 향후 전업의 과정까지 통합적 단계적 지원이 이루어질수 있는 정책이 집행되어야 한다.

(2) 산업형 성매매, 인터넷 성매매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위한 현장상담센터 확대 및 현장접근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한다.

- (3) 주거지원의 다양화 : 쉼터, 그룹홈, 개별 독립형 등 각 자활의 단계에 적합한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이 집행되어야한다.
- (4) 자활지원센터의 활성화 : 비입소 여성에 대한 자활지원 확대와 사회적 일자리 확보를 통한보호된 일자리 제공(인건비가 제공되는 작업장 운영과 사업팀 운영)이 필요하며 취업 및 창업을 위한 인큐베이팅(심리정서적 지원 및 교육 훈련지원 등) 역할을 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
- (5) 법률지원, 주거지원, 생계비지원, 의료지원, 자활지원 등 각각의 지원이 분절적이고 평균적으로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라 각 개별여성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중심으로 통합적 지원이 되어야 한다. 현재는 생계비지원과 주거지원, 일자리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없어 자활의 과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산의 확대를 통한 통합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나. 민관공조 체계 강화 및 지역자원 연계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 (1) 예방, 단속과 처벌, 성매매 여성의 인권보호 및 자활지원을 위한 정부내 관련 부처 간 공조체계 강화⁹⁾와 지자체의 민관공조 체계(지역 성매매방지협의회 등), 법률지원을 위한 법률지원단, 의료지원을 위한 의료지원단, 자활지원을 위한 지역 자원을 개발하고 연계망을 확대하는것이 필요하다.
- (2) 각 지역의 상담소와 쉼터 자활지원센터 간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자원 및 정보 공유와 연계체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3. 탈성매매 여성 자활지원¹⁰⁾ 사업 방향

가. 자활에 대한 개념과 구체적 목표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 자활이란(self-sufficiency) 경제적인 활동을 지속함으로써 경제적인 자립을 유지함과 동시에 심리적 정서적인 측면에서도 타인의 도움없이 스스로 설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고 할수 있다. 즉 자활은 계속되는 과정이며 장기적이며 개개인의 특성만큼이나 다양한 경로를 거치게 된다.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자활과정

9)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법무부, 경찰청 등 관련부처 간의 연계체계 강화 및 ,성매매방지 점검단 활동 강화가 필요하다.

10) 본문에서도 설명하고 있듯이 탈성매매 여성의 자활에 대한 개념은 통합지원 전반을 이야기하는 광의의 의미 일수도 있다. 그러나 본 장에서는 경제적인 활동을 지속함으로 자립을 유지할수 있는 전업을 지원하는 과정으로서 자활지원 사업 방향을 정리하고 있다.

이라고 할수 있는가? 광의의 의미로는 성매매 현장에 있을 때부터 지원하는 것을 말하며 협의의 의미로는 법률지원, 의료지원, 심리적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한 이후 본격적인 교육과 취업 및 창업 단계를 생각할 수 있다.

: 어디부터를 자활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든지 간에 현재 탈성매매여성들의 자활은 다른 취약계층에 비해서도 장기간을 요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성매매구조에 있었던 기간이 길수록 자립, 자활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고 어렵기 때문이다. 즉 과도한 기대를 가져서는 안되고 탈성매매와 전업을 지원하는 사회적 지원은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사회적, 국가적, 실무자간, 참여자사이에서 이해시키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 구체적으로는 1단계 치료, 보호, 심리정서적 지원, 자신감회복, 2단계 구체적 전업준비를 위한 교육훈련 3단계 전업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등으로 나눌수 있고 1단계와 2단계 과정이 최소 3-5년이 소요된다고 할 수 있다.

나. 탈성매매 여성들의 취약한 조건¹¹⁾

: 대부분의 탈 성매매여성들은 취약한 인적자본능력, 자신감 결여, 대인관계와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같은 심리적 문제들을 갖고 있다. 취약한 인적자본능력은 주로 서비스직으로 집중되어 있는 짧은 취업경험과 낮은 학력, 안 좋은 건강상태, 많은 부채와 신용불량 문제, 사회경험 부족, 사회적 자원부족, 현실성 부족으로 성공적인 취업 및 창업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 탈성매매여성들이 또한 사회적경험이 미약하다보니, 사실상 현재의 노동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조건, 임금 등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조건에 비해 높은 수준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희망하는 것도 사실이다.

: 탈성매매여성들이 사회진출의 준비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노동시장이 가지고 있는 문제¹²⁾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좋은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다.

다. 자활지원 사업 방향

(1) 탈성매매여성의 자활지원사업의 방향은 취업과 창업을 준비하기 위한 인

11) 탈성매매 여성들의 자활 욕구조사, 2005년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여성자활지원센터

12) 노동시장에서의 여성노동의 차별과 높은 실업률, 비정규직 확산 등과 같은 불안정 노동의 팽배

큐베이팅 과정이어야 한다.

- : 참여자의 연령이 20~30대로 젊고, 노동력이 왕성하여 취업의 기회가 다양할것 같으나, 탈 성매매여성들이 일반 20~30대 또래여성과 비교, 경쟁하였을 경우 취업, 창업에 있어 경쟁력이 없다.
- ; 따라서 탈성매매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심신의 회복 및 일반 사회로 진출을 위한 과도기적 교육훈련이 필요하며, 보호된 일자리를 중심으로 취업과 창업을 준비할 수 있는 incubating 과정이어야 한다.
- : 그렇다고 일반노동시장으로 진입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지속적인 취업알선과 취업 그리고 사후관리를 통해 사회진출을 도모하고, 부적응으로 다시 센터로 돌아오더라도 지속적인 지지를 통해 사회진출을 두려워해서는 안된다. 동일한 지원방식이 아닌 다양한 지원방식과 노력을 통해 다양한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2) 다양한 형태의 단계별 자활지원사업이 필요하다.(공동작업장→일자리창출을 통한 참여→취업 및 창업)

- : 공동작업장을 통한 인건비 문제의 해결은 참여자들에게 탈성매매후 단기간의긴급생계비를 해결하는 대안이면서, 사회적응 및 대인관계기술을 향상시킴으로서 이후 일자리참여, 취업 및 창업을 준비하고 모색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 : 따라서 공동작업장 형태의 낮은 강도의 노동과 비전문성을 요하는 훈련작업을 통하여 이후 직장형태의 사회적일자리 참여로 확대하고, 사회적응 및 대인관계기술의 향상, 직업교육을 통해 이후 실질적인 취업과 창업을 모색하는 단계별 지원체계이어야 한다.
- : 또한 탈성매매여성을 위한 자활사업은 최소한의 경제적 자활을 도모할 수 있는 형태의 공동작업장→자활사업 참여를 통한 안정적 사회적일자리사업이어야 한다. 이러한 단계별 지원은 위에서 말한 것처럼 꼭 동일할 필요는 없다.

(3) 최소 2~3년간의 안정적인 사회적일 자리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 : 본 센터는 2005년 탈성매매여성 16명에게 일자리창출 및 취업알선 진행한바 있다. 참여자에 따라 최고 12개월에서 3개월까지 근무하면서, 대부분의 참여자가 이후 사업종료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을 자주 호소하였다. 이는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일자리제공에 대한 한계를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로서, 탈성매매 여성들이 취업 및 창업으로 연계되기까지

의 안정적인 일자리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바가 크다.

: 또한 한 사람의 성공적인 전업은 탈성매매 여성들에게 힘을 주는 모델이 되고, 서로 간에 지지와 격려를 통해 자활의지를 강화하고 극대화할 수 있다.

: 따라서 탈성매매여성의 특성에 맞는 여성가족부가 창출하는 사회적일자리가 필요하다.

(4) 탈성매매여성들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창출 및 아이템 개발이 필요하다.

: 그렇다고 소극적 아이템 선정(탈성매매여성의 특성을 고려한다고 하여 한정된)과 취업알선(서비스직)과 직업훈련(피부미용, 홈패션, 네일아트 등)은 지양해야 한다. 모든 여성들이 같은 취미와 적성은 갖은 것은 아니다.

(5) 보호된 일자리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으로 적극적 진입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 공동작업장 - 일자리창출사업 - 취업 및 창업 형태의 단계별 지원과 함께, 일정정도 사회참여의 준비가 된 탈성매매여성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나 취업 알선을 통한 사회적응프로그램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수당이나 지원금 제도도 고민해 볼만 한다.(예를 들어, 취업(아르바이트-규정필요)시 ○○만원 지원, 3개월 고용유지시 ○○만원 지원 등)

: 이때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탈성매매여성들을 사회로 무조건 내모는 형식이 아니라, 하나의 준비과정, 사회화의 과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나 취업을 나갔다고 하더라도 적응하지 못하여 다시 자활지원센터로 되돌아와 공동작업장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본다.

: 탈성매매여성들로 구성된 사업단, 일자리 등도 필요하겠지만, 한편으로는 공격적 자활지원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때는 상담과 사후관리 등이 함께 가야 할 것이다.

나오며

한국사회 성매매문제는 거대하고 복잡하다. 성매매는 젠더, 계급, 빈곤, 인종, 섹슈얼리티 등의 가부장적 자본주의 구조안에서 작동되는 차별의 문제가 상호 연관되어 발생하는 것이다. 특히 신자유주의적 경제 질서는 빈곤의 여성화, 이주의 여성화는 여성에게 섹슈얼리티만을 교환가능한 자원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물론 결코 평등한 교환일수 없는 인권침해이며 폭력적인 성적 착취의 과정으로서 성매매가 지속되고 있는것이다. 불평등한 여성 고용시장의 현실에서 여성들을 성산업으로의 유입을 강제당한다. 유입 이후에는 쉽게 벗어날 수 없는 폭력적 구조가 존재한다. 성매매여성은 피해자이다. 그녀들이 성매매 현장에서 벗어나 성매매 아닌 대안적 삶을 꿈꿀수 있는 힘과 자원을 지원하는 일은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져 나가야 하는 과제이다. 법 시행이후 여성들의 자활의 성과를 성급하게 평가하고자 하는 잣대는 여성들의 자활에 큰 걸림돌이다. 100여년간 지속되어온 한국의 성매매 산업이 근절의 길을 이제 시작한 것처럼 여성들의 새로운 삶의 길도 이제 준비되고 시작되고 있는것이다.